

**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
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안 설 명

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

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!
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
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,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
제28조(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)에 따른 국민권익위원

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로 인해 [별지] 하단에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, 추첨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기입하도록 하였습니다.

이에 본 조례안은

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도록 기입하여 명시하였습니다.

아무쪼록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로 인한 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!!